

제2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12. 5. 21.(월)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이계철 위 원 장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① 서면회의 사유

-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제1항제1호에 따른 제2010-1차 전원회의(2010.1.14)에서 의결한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에 해당됨
- 보고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의1(서면보고)제1항에 따른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안건에 해당됨

② 의결사항

가.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인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 (주)씨제이헬로비전의 (주)씨제이헬로비전영동방송 등 4개 계열사 주식취득 - (2012-28(서)-106)
-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1항과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에 의거, (주)씨제이헬로비전의 (주)씨제이헬로비전영동방송 등 4개 계열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주식소유 인가 및 방송법상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주식취득법인 : (주)씨제이헬로비전(대표자: 변동식) >

주요사업	사업구역	주요주주	경영현황('11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종합유선방송사업 (2,421천명) 기간통신사업 (601천명)	전국	(주)씨제이오쇼핑 53.9% (주)씨제이헬로비전 11.5% Sable (Asia)Ltd. 10.6% AA Merchant Banking B.V 6.6% Formosa Cable Investments Ltd. 6.3%	1,732억원	5,819억원 (통신: 1,252억원)	1,326억원

< 피주식취득법인 >

구분	(주)씨제이헬로비전 대구동구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대구수성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아라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영동방송
대표	이상용	이상용	노성철	이상용
주요 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64천명) 기간통신사업 (9천명)	종합유선방송사업 (83천명) 기간통신사업 (13천명)	종합유선방송사업 (156천명) 기간통신사업 (17천명)	종합유선방송사업 (179천명) 기간통신사업 (26천명)
사업 권역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주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태백시
경영 현황 ('11)	·매출액: 90억원 (통신 15억원) ·자본금: 50억원 ·영업이익: 16억원	·매출액: 158억원 (통신 23억원) ·자본금: 40억원 ·영업이익: 41억원	·매출액: 251억원 (통신 28억원) ·자본금: 100억원 ·영업이익: 57억원	·매출액: 323억원 (통신 45억원) ·자본금: 169억원 ·영업이익: 66억원
주주 현황	(주)씨제이헬로비전 0% → 100% 씨제이이앤엠(주) 100% → 0%	(주)씨제이헬로비전 0% → 100% 씨제이이앤엠(주) 100% → 0%	(주)씨제이헬로비전 0% → 100% 씨제이이앤엠(주) 100% → 0%	(주)씨제이헬로비전 0% → 100% 씨제이이앤엠(주) 100% → 0%

③ 보고사항

가. 제18대 국회 폐기법안 일괄 재입법 추진에 관한 사항

- 제18대 국회임기 종료로 폐기되는 방통위 소관 법안(정부입법) 중 일괄 재입법 추진 대상 법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 일괄 재입법 추진요건(법제처) : ① 폐기된 법안의 내용과 동일
 ② 1년 이내의 국회 계류기간
 ③ 연내 신속한 법제화 필요

○ 주요 내용

① 방송법

-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 추가
-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허용
-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중계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확대하여 직접 규정 (시행령 규정 → 법률에 상향입법)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대한 중계가능 방송사업자의 사전 고시

② 전파법

- 주파수 사용승인을 안보 목적 또는 국제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관련 기준 및 절차 마련
-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의 설립근거 마련
- 우주전파재난 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우주전파재난 대책본부 설치·운영 근거 마련
-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③ 전기통신사업법

-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 개선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과 주파수할당 신청 시기의 불일치 해소 등)
-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

○ 추진계획

- 관계부처 협의, 부패영향·통계기반·성별영향분석평가 : '12. 5월말
- 입법예고 : '12. 5.25~
- 위원회 의결, 규제위·법제처 심사 : '12. 6~7월
- 차관·국무회의 및 국회 제출 : '12. 8월

나. 청년 희망, 창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 분야 창업형 고용 확대, 고용시장의 수급불균형 해소,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을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주요 내용(세부 추진과제)

① 창업형 고용 확대

- 방송통신 분야 유망 벤처 및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영·교육·창업자금·해외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업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지원센터',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일산)에 장비·공동작업실·테스트베드 등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클러스터) 구축
-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전용 R&D를 신설하고, 대기업·하드웨어 중심의 R&D를 개편하여 1인 창조기업 등 소규모 그룹의 창의적 아이디어·기술혁신 실험을 지원하는 챌린지형 R&D 추진
- 청년층 창업 붐 조성을 위해 방송통신 분야 스타 창업가에 관한 다큐·드라마 등 창업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
-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등을 통해 우수 청년 기업인을 시상하고 창업 사례를 적극 홍보

② 고용 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

- 업계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UI/UX, 차세대 융합·모바일, 스마트광고·전파 등 방송통신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신설
- 현장실습 등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과 취업 연계를 강화
- 특성화 대학(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방송통신망 시공·설계, 방송제작(무대디자인·조명·카메라) 실무인력 교육 확대·신설
- '모바일·미디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특성화고·대학 1인 창작집단을 대상으로 직업정보,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멘토링 제도 운영
- 산하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확대하고, 학력 보다는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 분야 자격증 제도 내실화

③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정착

- 스마트TV·3D방송·근접통신·클라우드·사물지능통신·스마트광고·생활전파 등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여 관련 분야의 고용 창출력 제고

·3년간 정부예산 약 1,186억을 투입하여 기술개발·표준화, 중소기업 자금 및 인력 지원, 시범서비스 발굴, 법제 제·개정 등 추진

- 해외한국어방송사 인턴·사이버폭력 예방 전문강사 파견, TV 유희 대역 실측 조사원 채용 등 재정 지원을 통한 직접 고용 확대
-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R&D 사업 추진 시, 사업비에 인건비를 반영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신규 고용 확대 유도
- 인터넷정보서비스 등 유망서비스업 R&D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광고·콘텐츠 관련 고용 확대 유도를 위해 방송광고 편성규제 완화 등 추진
- 노인·장애인 등 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형 스마트워크 모델 개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방송분야 근로자 처우개선 등 고용 복지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정책 이행점검을 위한 ‘방송통신 일자리 TFT 운영’ (‘12. 3·4분기)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 공사업 등록신청접수업무 등의 민간 위탁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주요 내용

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의2, 별표 8)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금액, 징수절차 및 행정 처분 기록 등을 규정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1,000만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3,000만원

② 공사업의 등록신청 접수, 등록기준 신고 접수, 양도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의 접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안 제53조)

- 공사업의 등록 신청 접수 등 단순 업무를 민간기관인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③ 정보통신공사의 연면적 정의 규정 마련(안 제4조제1항제2호)

- 사용전검사 및 감리대상 공사의 판단을 위해 둘 이상의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되는 경우 둘 이상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로 규정

○ 추진일정

-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 2012. 5월 ~ 6월
- 위원회 의결 : 2012. 6월
-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제출 : 2012. 7월